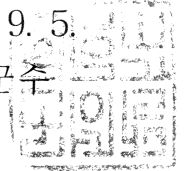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달성군주



1. 제안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`23. 6. 11.)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의 조문 변경(안 제1조)

- 제88조 → 제88조의2

나.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도시철도역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심의·의결 사항 삭제

다.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근거 법령에 명시된 위원의 구성 요건 반영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제91조의2

(2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7. 30. ~ 8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변경 또는 조정”을 “변경, 폐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7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3명 이상으로”를 “6명 이내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장하는 국장”을 “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관계공무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지명의 제정, <u>변경 또는 조정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도로, 교량, 터널, 램프, 지하 보도, 공원, 광장 등 시설물과 도시철도역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변경, 폐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<u>3명 이상으로</u> 하여야 한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0</u> <u>명</u> ----- ----- ----- <u>6명 이내로</u>-----</p>

<p>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<u>관장하는 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<u>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</u> <u>등 관계공무원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담당하는 과장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관계공무원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'23. 6. 11. 개정)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 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·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('23. 6. 11. 개정)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